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783호 2010. 6. 1(화)

- 부시장지시사항..... 2
- ◀ 입법예고 ▶
-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제2010-569호) 8
-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0-39호) 20
-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0-42호) 22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제2010-43호) 44
- 포항 신흥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제2010-44호) 46
- ◀ 공 고 ▶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55

회 람									
--------	--	--	--	--	--	--	--	--	--

부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5. 28(금) 시민의 날 추진상황 보고회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님 부재중 당면 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 한달 남은 상반기 조기집행 및 목표율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선거참여 홍보 및 공무원 선거중립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사항은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협조가 있었기에 성과거양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지방선거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부서별 관련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 및 구성원에게 투표참여 홍보를 하시기 바람, 특히 직원들은 가족 등에게 홍보 바람. - 아울러 출장중 유세장 등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직자로서 선거중립에 솔선수범 바람. ○ 시민의 날 추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식후 월드컵 응원전이 열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부서간·경찰 등과 협조하여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언론 홍보 및 가로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미리 게첨하기 바람. 	<p>전 부 서</p> <p>기획예산과 전 부 서</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p> <p>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건 설 과 농축산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과는 ‘영일만 친구 쌀 막걸리 출시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흥을 돋우며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라며, 출시 퍼포먼스는 특색 있고 짜임새 있는 이벤트와 볼거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 2010. 5. 28(금) D-50일 준비상황 보고회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체전 개·폐회식 당일 관람객의 안전대책을 위해 유관기관 및 경찰서와 협조하여 관람객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민체전 준비상황을 부서별로 수시로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을 체크하여 조속히 정상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수부서는 시상 할 것. ○ 도민체전을 계기로 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 선수단 숙박배정시 가격불만 해소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사전계도 및 초청자에 대한 의전에 철저를 기할 것. 	재난안전과 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환경위생과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5.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체전 자원봉사 지원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대회기간 내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대책과 주경기장 주변의 노점상 정리, 경기장 안내표지판 및 대회 안내 팸플릿 등을 사전준비 하여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이번 체전은 혹서기인 7월에 개최되는 만큼 음식, 식중독, 급수, 의료지원 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 ○ 당초 대회 경기 우승 시·군부 맞추기 이벤트를 각 종목별 경기 우승 시·군부 맞추기 프로그램으로 확대 조정할 것. ○ 물자대책반에서는 대회기간중 소요물자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특히 차량지원(시청, 구청, 포스코 및 대기업)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 농수산물 홍보에 있어 보다 실질적으로 포항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도민체전의 관광객, 민원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상황실(자원봉사, 환경위생, 청소, 교통)을 운영할 것 	<p>새마을평생학습과 교통행정과</p> <p>체육지원과 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 건 설 과 도시계획과 환경위생과 (남북부보건소)</p> <p>정보통신과</p> <p>재정관리과</p> <p>농축산과 수산진흥과</p> <p>체육지원과 관광진흥과 새마을평생학습과 환경위생과 청 소 과 교통행정과</p>

- 2010. 5. 31(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5. 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준비 및 당면업무 추진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림. ○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제고 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까지 최대한 투표율이 제고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투표율 제고를 위한 행정조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님. ○ 시장님 업무 복귀에 따른 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님 부재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등 시장님 업무 복귀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아울러 당선자들에게 축전 전송을 준비하기 바람. ○ 현충일 조기 계양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충일 조기 계양 홍보하여 호국보훈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선거로 어수선해진 분위기 정리하기 바람. ○ 6월, 7월 대형행사 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의 현충일, 시민의 날, 6.25 60주년 행사에 이어 7월1일 시장님 취임식, 도민체전, 해양스포츠제전, 국제불빛축제 등 우리시로서는 중요한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므로 전부서가 합심하여 모든 행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동빈내항 보상문제 원만히 해결추진토록 노력 바람. 	<p>전 부 서</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p> <p>자치행정과 저출산고령화 대 책 과</p> <p>전 부 서 저출산고령화 대 책 과 자치행정과 체육지원과 관광진흥과</p> <p>동빈내항복원팀</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5. 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한 긴급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시장님 업무 복귀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직원 음주운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듭된 당부와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여 본인은 물론 시전체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해수욕장 개장 준비 및 홍보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비, 편의시설 보수 등 피서객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외지인들이 여름 피서지로 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통해 홍보하기 바람. ○ 구제역 확산이 주춤하고 있지만 긴장을 끈을 늦추지 말고 차단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가로수 병충해 방제작업을 환경정비(플베기 등)와 함께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하기 바람. ○ 변두리 원룸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하기 바람. ○ 농촌일손돕기 지속 추진하기 바람. 	<p>항만정책팀</p> <p>전 부 서</p> <p>수산진흥과</p> <p>농축산과</p> <p>도시녹지과 남·북구청 읍 면 동</p> <p>청 소 과 읍 면 동</p> <p>농축산과 읍 면 동</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5. 31)</p>	<p>○ 중앙상가 실개천 관리 철저.</p> <p>- 날씨가 더워지면서 중앙상가 실개천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음. 실개천 수질 및 시설물 관리, 환경정비, 차량통제 등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것.</p> <p>○ 저수지 환경정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p> <p>- 저수지 및 낚시터에 환경정비 바라며, 낚시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바람.</p> <p>○ 외곽지 버스정류장에도 정류소 안내단말기 및 배차시간표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바람.</p>	<p>경제노동과</p> <p>농축산과 수산진흥과 읍 면 동</p> <p>교통행정과</p>

입법예고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권한대행 윤정용
부 시 장

2010년 5월 27일

포항시 공고 제2010- 569호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2010. 4.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4호, 2010. 4. 13. 공포, 2010. 4. 1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

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공동위원장 : 부시장 및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분과위원회 구성(3개 분과 각 15명 이내 위촉위원)
 -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라.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시는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
-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마.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작성

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위해 노력

사.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

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안 제23조)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 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3. 관련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녹색성장팀장, 주소: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054-270-2583, 팩스: 054-270-2569, E-mail: members@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포항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함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함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함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함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함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함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함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 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함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함
10.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함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포항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시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

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 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경상북도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

으며 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성장 추진체계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시 소속 본부장, 국장급 공무원
- 2. 시의회 의원
- 3.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4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녹색성장책임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3.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관련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9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22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3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4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 세대 및 미래 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및 시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 한다.

제25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고 시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권한대행 윤정용
부 시 장

2010년 5월 26일

포항시 고시 제2010 - 39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에 다 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죽도1	노외주차장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4번지 일원	-	증)2,062	2,062	-	-

나.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 사유서
죽도1	노외주차장	신설 (A=2,062m ²)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죽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청하 월포·용두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윤 정 용

2010년 5월 27일

포항시 고시 제2010 - 42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구역(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확정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① 용도지구·용도구역 결정(변경)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6-3	월포용두리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용두리		306,000	포항고 제99-298호 ('99. 6. 8)	
변경	1-6-3	월포용두리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청하면 월포리 271 일원		351,772		지구 확장

2.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 16	월포용두리지구	청하면 월포리 271 일원	306,000	45,772	351,772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주거형

②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계	306,000	351,772	100.0	
주거용지	209,705	226,899	64.5	
상업용지	5,270	4,830	1.4	주거용지대비 2.1%
공업용지	-	-	-	
녹지용지	35,333	46,307	13.2	
어린이공원	8,968	8,526	2.4	
공공공지	6,627	11,083	3.2	
녹지	8,522	16,846	4.8	
하천	11,216	9,852	2.8	
공공시설용지	55,692	73,736	20.9	
공공시설	10,072	10,354	2.9	학교
도로	45,620	63,382	18.0	

③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

구 분	류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43	7,860	63,382	•가각 포함	
일	소 계	-	43	7,860	63,382		
	대로	소계	-	-	-	-	
		2류	-	-	-	-	
		3류	-	-	-	-	
	반	소계	-	1	1,173	15,438	
		1류	-	-	-	-	
2류		-	-	-	-		
도	3류	12	1	1,173	15,438		
	소계	-	42	6,687	47,944		
	1류	10	5	2,156	21,996		
	2류	8	-	-	-		
로	소로	6	21	3,214	20,174		
		4	16	1,317	5,774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	10	집산	60	소로 1-1	동측구역계 공유수면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중로	3	1	12	집산	1,302 (1,173)	남측지구계 용두리405-8	소로 1-1	일반			노폭확장 및 노선연장
기정	소로	1	1	10	집산	1,477 (1,275)	남측지구계 용두리587-2	북측지구계 공유수면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은 지구내 연장
변경	소로	1	1	10	집산	1,632 (1,480)	남측지구계 용두리587-2	북측지구계 월포리 산21	일반			노선연장
기정	소로	1	2	10	집산	88	소로 1-1	서측지구계 월포리 649-2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기정	소로	1	3	10	집산	238	소로 1-1	동측구역계 월포리 92-94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1	3	10	집산	244	소로 1-1	동측구역계 월포리 92-71	일반			노선연장
기정	소로	1	5	10	집산	197	소로 1-1	동측구역계 공유수면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1	4	10	집산	233	중로 3-1	소로 1-1	일반			노선연장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26	6	국지	43	소로 1-1	소로 3-24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기정	소로	3	27	6	국지	40	소로 3-24	동측구역계 용두리 438-2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1	5	10	집산	111	중로 3-1	소로 1-1	일반			노선합병, 노선확폭 및 노선연장
기정	소로	3	1	6	국지	456	소로 1-1	소로 1-1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기정	소로	3	2	6	국지	58	소로 1-1	소로 3-1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기정	소로	3	6	6	국지	127	소로 1-5	소로 3-9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3	6	국지	123	소로 1-4	소로 3-26	일반			연장조정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7	6	국지	415	소로 1-1	소로 1-5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4	6	국지	415	소로 1-1	소로 1-4	일반			노선번호변경 및 종점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2	6	국지	124	소로 1-1	소로 3-7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5	6	국지	124	소로 1-1	소로 3-4	일반			노선번호변경 및 종점변경
기정	소로	3	13	6	국지	105	소로 1-1	서측구역계 월포리 193-2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6	6	국지	105	소로 1-1	서측구역계 월포리 193-2	일반			노선번호변경
기정	소로	3	14	6	국지	31	소로 3-7	동측구역계 월포리92-119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7	6	국지	45	중로 3-1	소로 3-4	일반			노선연장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15	6	국지	95	소로 3-7	동측구역계 월포리92-120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8	6	국지	97	중로 3-1	소로 3-4	일반			선형조정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22	6	국지	89	소로 3-17	동측구역계 월포리 92-78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9	6	국지	103	중로 3-1	소로 3-13	일반			노선연장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18	6	국지	77	소로 1-1	서측구역계 월포리 615-8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10	6	국지	77	소로 1-1	서측구역계 월포리 615-8	일반			노선번호변경
기정	소로	3	19	6	국지	51	소로 1-1	소로 3-16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11	6	국지	49	소로 1-1	소로 3-12	일반			연장조정 및 종점변경
기정	소로	3	16	6	국지	212	소로 1-3	소로 3-7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12	6	국지	211	소로 1-3	소로 3-4	일반			노선번호변경, 연장조정 및 종점변경
기정	소로	3	17	6	국지	195	소로 1-3	소로 3-7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13	6	국지	195	소로 1-3	소로 3-4	일반			노선번호변경 및 종점변경
기정	소로	3	23	6	국지	89	소로 1-1	소로 3-24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14	6	국지	90	소로 1-1	소로 3-15	일반			노선번호변경, 연장조정 및 종점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4	6	국지	560	소로 1-1	소로 1-3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15	6	국지	216	소로 1-3	소로 1-5	일반			노선분리 및 시종점변경
변경	소로	3	17	6	국지	332	소로 1-1	소로 1-5	일반			
기정	소로	3	25	6	국지	169	소로 1-1	서측구역계 용두리 587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16	6	국지	169	소로 1-1	서측구역계 용두리 587	일반			노선번호변경
기정	소로	3	28	6	국지	100	소로 1-1	소로 3-24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18	6	국지	100	소로 1-1	소로 3-17	일반			노선번호변경 및 종점변경
기정	소로	3	29	6	국지	55	소로 3-24	동측구역계 용두리 431-108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19	6	국지	72	중로 3-1	소로 3-17	일반			노선연장, 시종점변경 및 노선번호변경
기정	소로	3	30	6	국지	96	소로 1-1	소로 3-24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20	6	국지	99	소로 1-1	소로 3-17	일반			노선번호변경, 연장조정 및 종점변경
기정	소로	3	31	6	국지	41	소로 3-24	동측구역계 용두리 431-37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21	6	국지	78	중로 3-1	소로 3-17	일반			노선연장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3	4	국지	30	소로 3-1	월포리 51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22	4	국지	30	소로 3-1	월포리 51	일반			노선번호변경
기정	소로	3	4	4	국지	77	소로 3-1	월포리 산20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23	4	국지	77	소로 3-1	월포리 산20	일반			노선번호변경
기정	소로	3	5	4	국지	49	소로 1-1	소로 3-1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24	4	국지	49	소로 1-1	소로 3-1	일반			노선번호변경
기정	소로	3	33	4	특수	86	소로 3-7	소로 3-9	보행자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25	4	국지	86	소로 3-4	소로 3-26	일반			노선번호변경 및 시종점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8	4	국지	100	소로 1-1	소로 3-6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기정	소로	3	9	4	국지	66	소로 3-6	소로 3-7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26	4	국지	173	소로 1-1	소로 3-4	일반			노선합병 및 연장조정
기정	소로	3	10	4	국지	35	소로 3-7	동측구역계 월포리 92-119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27	4	국지	42	중로 3-1	소로 3-4	일반			노선번호변경, 노선연장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11	4	국지	265	소로 3-8	소로 3-9	일반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28	4	국지	265	소로 3-26	소로 3-26	일반			노선번호변경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34	4	특수	83	소로 3-11	소로 3-11	보행자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29	4	국지	83	소로 3-28	소로 3-28	일반			노선번호변경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35	4	특수	24	소로 3-7	소로 3-11	보행자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30	4	국지	24	소로 3-4	소로 3-28	일반			노선번호변경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36	3	특수	38	소로 3-7	동측구역계 월포리 92-119	보행자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31	4	국지	43	중로 3-1	소로 3-4	일반			노선번호변경, 노선연장, 노선확폭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37	3	특수	136	소로 3-7	월포리 98-1	보행자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기정	소로	3	39	2	특수	46	소로 3-37	소로 3-40	보행자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32	4	국지	116	소로 3-5	소로 3-33	일반			노선합병, 노선확폭, 선형조정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40	2	특수	72	소로 3-7	소로 3-11	보행자		경북도 제07-268호 (07.06.04)	
변경	소로	3	33	4	국지	72	소로 3-4	소로 3-28	일반			노선번호변경 및 선형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0	4	국지	81	소로 3-16	소로 3-17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34	4	국지	82	소로 3-12	소로 3-13	일반			노선번호변경, 선형조정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21	4	국지	86	소로 3-16	소로 3-17	일반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35	4	국지	86	소로 3-12	소로 3-13	일반			노선번호변경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51	2	특수	38	소로 3-25	용두리 470-2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36	4	국지	38	소로 3-16	월포초등학교	일반			노선번호변경, 노선확폭 및 시종점변경
기정	소로	3	52	2	특수	52	소로 3-25	서측구역계 용두리 587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변경	소로	3	37	4	국지	51	소로 3-16	서측구역계 용두리 587	일반			노선번호변경, 노선확폭, 연장조정
폐지	소로	3	32	2	특수	23	소로 3-1	소로 3-1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폐지	소로	3	38	3	특수	15	소로 3-11	소로 3-37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폐지	소로	3	41	2	특수	99	소로 1-1	소로 3-13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폐지	소로	3	42	2	특수	105	소로 3-13	소로 3-18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폐지	소로	3	43	2	특수	66	소로 3-7	소로 3-20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폐지	소로	3	44	2	특수	19	소로 3-16	소로 3-43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폐지	소로	3	45	2	특수	37	소로 3-17	소로 3-43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폐지	소로	3	46	2	특수	55	소로 3-20	소로 3-21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폐지	소로	3	47	2	특수	96	소로 1-3	소로 3-21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폐지	소로	3	48	2	특수	25	소로 3-16	소로 3-47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폐지	소로	3	49	2	특수	55	소로 1-1	소로 3-16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폐지	소로	3	50	2	특수	59	소로 3-16	소로 3-49	보행자		경북도 제07-288호 (07.06.04)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8,968	감 442	8,526	-	
변경	1	-	어린이공원	월포리 92-32	2,007	증 25	2,032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변경	2	-	어린이공원	월포리 293-28	2,996	감 200	2,796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변경	3	-	어린이공원	용두리 364-1	3,965	감 267	3,698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8,522	증 8,324	16,846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산5	4,402	-	4,402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산6	520	-	520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52-2	495	-	495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645-114	710	-	710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3-18	-	증 1,396	1,396	-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공유수면	462	증 616	1,078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시설번호 변경 (5→6)
신설	7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98-1	-	증 100	100	-	
변경	8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271	176	증 653	829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시설번호 변경 (6→8)
변경	9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648	414	증 855	1,269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시설번호 변경 (7→9)
신설	10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648	-	증 777	777	-	
신설	11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92-86	-	증 2,609	2,609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	녹지	경관녹지	월포리 309	965	감 14	951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시설번호 변경 (8→12)
변경	13	녹지	경관녹지	용두리 582-2	378	증 1,332	1,710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시설번호 변경 (9→13)

3)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627	증 4,456	11,083	-	
기정	1	공공공지	월포리 645-25	158	-	158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기정	2	공공공지	월포리 645-13	664	-	664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기정	3	공공공지	월포리 44-1	192	-	192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기정	4	공공공지	월포리 645-5	901	-	901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변경	5	공공공지	월포리 89	644	감 2	642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변경	6	공공공지	월포리 645-31	1,179	감 11	1,168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변경	7	공공공지	월포리 92-102	725	증 966	1,691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변경	8	공공공지	월포리 181	555	감 3	552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폐지	9	공공공지	월포리 91-22	930	감 930	-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신설	9	공공공지	월포리 92-77	-	증 523	523		
변경	10	공공공지	월포리 92-29	679	증 33	712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신설	11	공공공지	월포리 92-88	-	증 394	394		
신설	12	공공공지	용두리 431-108	-	증 332	332		
신설	13	공공공지	용두리 431-108	-	증 833	833		
신설	14	공공공지	용두리 405-2	-	증 2,321	2,321		

다. 공공·문화시설

1)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월포리 306	10,072	증 282	10,354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라. 도시방재시설

1)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계				-	-	-	264	-	9,852	-	
기정	1	하천	소하천	월포리 645-114	월포리 645-114		31	6~37	560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기정	2	하천	소하천	월포리 645-114	월포리 645-114		179	33~47	7,507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변경	2	하천	소하천	월포리 645-114	월포리 공유수면		233	33~47	9,292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폐지	3	하천	소하천	월포리 98-1	월포리 648		133	4~8	786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폐지	4	하천	소하천	월포리 648	월포리 648		124	4~7	760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폐지	5	하천	소하천	월포리 648	월포리 648		70	5~7	452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폐지	6	하천	소하천	월포리 648	월포리 92-86		77	5~8	497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폐지	7	하천	소하천	용두리 585-21	용두리 585-21		110	4~8	654	경북고 제07-268호 ('07.06.04)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허용(권장)용도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A(주거용지)	B(상업용지)	C(공공시설용지)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제외(일반음식점은 포항시도시계획조례 별표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공장으로서 제2호 카목(1)내지(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포항시도시계획조례 별표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포항시도시계획조례 별표25에서 규정한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창고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권장 용도	-	-	-

주) 건축물허용(권장)용도 구분은 포항시도시계획조례 별표7 및 별표24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1 - 1	월포리 5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 - 2	월포리 1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 - 1	월포리 645-2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 - 2	월포리 44-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3 - 1	월포리 43-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4 - 1	월포리 9-2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5 - 1	월포리 3-17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6 - 1	월포리 8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7 - 1	월포리 9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7 - 2	월포리 90-2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8 - 1	월포리 92-56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9 - 1	월포리 13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9 - 2	월포리 90-1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0 - 1	월포리 98-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0 - 2	월포리 195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0 - 3	월포리 90-2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0 - 4	월포리 90-1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11 - 1	월포리 92-64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1 - 2	월포리 92-67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2 - 1	월포리 92-16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3 - 1	월포리 172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4 - 1	월포리 257번지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5 - 1	월포리 192-2번지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16 - 1	월포리 246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7 - 1	월포리 28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8 - 1	월포리 275-1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19 - 1	월포리 92-2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0 - 1	월포리 199-2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1 - 1	월포리 226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22 - 1	월포리 293-4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3 - 1	월포리 92-37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3 - 2	월포리 92-5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B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단, 숙박시설은 바닥면적합계 660㎡이하, 3층 이하
23 - 3	월포리 92-9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B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단, 숙박시설은 바닥면적합계 660㎡이하, 3층 이하
24 - 1	용두리 480-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4 - 2	용두리 465-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허용용도		
25 - 1	월포리 292-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6 - 1	월포리 292-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7 - 1	월포리 294-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7 - 2	월포리 294-5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7 - 3	월포리 92-1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B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단, 숙박시설은 바닥면적합계 660㎡이하, 3층 이하
27 - 4	월포리 92-95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B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단, 숙박시설은 바닥면적합계 660㎡이하, 3층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28 - 1	용두리 155-1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8 - 2	용두리 462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9 - 1	용두리 437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30 - 1	용두리 431-3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31 - 1	용두리 41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32 - 1	용두리 431-25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33 - 1	용두리 40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34 - 1	용두리 431-2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34 - 2	용두리 364-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34 - 3	용두리 329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	용지별 건축물 허용(권장) 용도 구분 참고
			권장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2.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계획대상지내 주거지 일대	주 보행동선 (L=195m)	소3-13호선 변
-	해안도로변	주차허용구간	공공공지⑦⑨⑪⑫⑬⑭ 일대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1	1-1	14,932	1BLOCK 1LOT	9,319	주거용지
	1-2		1BLOCK 2LOT	5,613	주거용지
2	2-1	3,739	2BLOCK 1LOT	2,467	주거용지
	2-2		2BLOCK 2LOT	1,272	주거용지
3	3-1	2,054	3BLOCK 1LOT	2,054	주거용지
4	4-1	2,834	4BLOCK 1LOT	2,834	주거용지
5	5-1	430	5BLOCK 1LOT	430	주거용지
6	6-1	11,300	6BLOCK 1LOT	11,300	주거용지
7	7-1	6,115	7BLOCK 1LOT	4,635	주거용지
	7-2		7BLOCK 2LOT	1,480	주거용지
8	8-1	2,263	8BLOCK 1LOT	2,263	주거용지
9	9-1	7,620	9BLOCK 1LOT	5,869	주거용지
	9-2		9BLOCK 2LOT	1,751	주거용지
10	10-1	10,179	10BLOCK 1LOT	3,878	주거용지
	10-2		10BLOCK 2LOT	2,900	주거용지
	10-3		10BLOCK 3LOT	2,372	주거용지
	10-4		10BLOCK 4LOT	1,029	주거용지
11	11-1	4,169	11BLOCK 1LOT	1,834	주거용지
	11-2		11BLOCK 2LOT	2,335	주거용지
12	12-1	4,387	12BLOCK 1LOT	4,387	주거용지
13	13-1	5,376	13BLOCK 1LOT	5,376	주거용지
14	14-1	5,245	14BLOCK 1LOT	5,245	주거용지
15	15-1	8,855	15BLOCK 1LOT	8,855	주거용지
16	16-1	4,554	16BLOCK 1LOT	4,554	주거용지
17	17-1	4,157	17BLOCK 1LOT	4,157	주거용지
18	18-1	5,416	18BLOCK 1LOT	5,416	주거용지
19	19-1	6,796	19BLOCK 1LOT	6,796	주거용지
20	20-1	9,124	20BLOCK 1LOT	9,124	주거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21	21-1	5,890	21BLOCK 1LOT	5,890	주거용지
22	22-1	5,002	22BLOCK 1LOT	5,002	주거용지
23	23-1	5,433	23BLOCK 1LOT	3,030	주거용지
	23-2		23BLOCK 2LOT	1,612	상업용지
	23-3		23BLOCK 3LOT	791	상업용지
24	24-1	13,062	24BLOCK 1LOT	9,451	주거용지
	24-2		24BLOCK 2LOT	3,611	주거용지
25	25-1	8,844	25BLOCK 1LOT	8,844	주거용지
26	26-1	5,385	26BLOCK 1LOT	5,385	주거용지
27	27-1	22,619	27BLOCK 1LOT	17,331	주거용지
	27-2		27BLOCK 2LOT	2,861	주거용지
	27-3		27BLOCK 3LOT	1,403	상업용지
	27-4		27BLOCK 4LOT	1,024	상업용지
28	28-1	5,588	28BLOCK 1LOT	1,567	주거용지
	28-2		28BLOCK 2LOT	4,021	주거용지
29	29-1	5,927	29BLOCK 1LOT	5,927	주거용지
30	30-1	5,878	30BLOCK 1LOT	5,878	주거용지
31	31-1	7,001	31BLOCK 1LOT	7,001	주거용지
32	32-1	5,820	32BLOCK 1LOT	5,820	주거용지
33	33-1	7,247	33BLOCK 1LOT	7,247	주거용지
34	34-1	8,488	34BLOCK 1LOT	2,440	주거용지
	34-2		34BLOCK 2LOT	4,723	주거용지
	34-3		34BLOCK 3LOT	1,325	주거용지
계		231,729	-	231,729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120,043㎡미포함)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포항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윤 정 용

2010년 5월 26일

포항시 고시 제2010 - 43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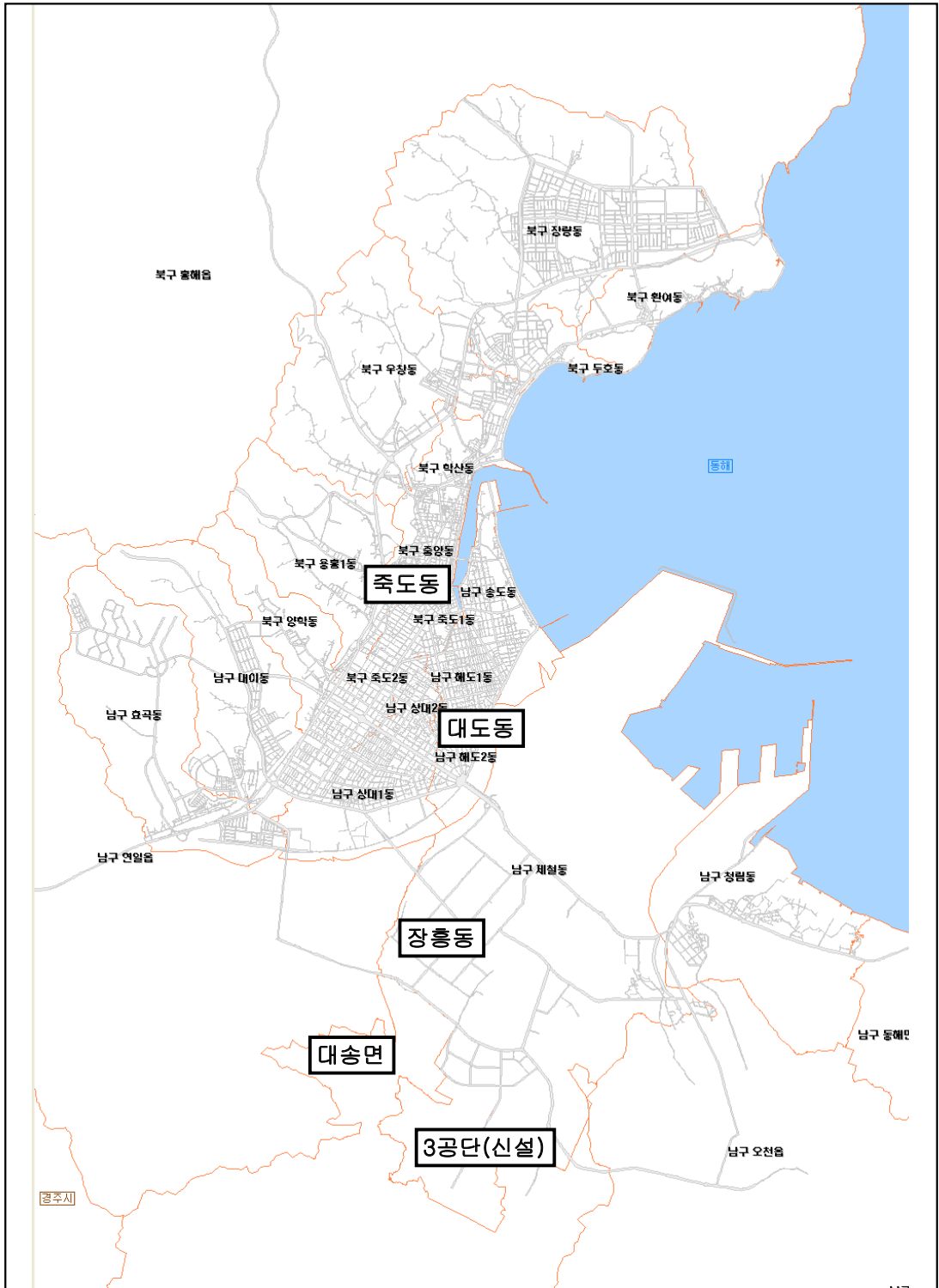
1. 사업목적

-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대기오염도 상시파악,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진단, 지역 대기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오존경보제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설치장소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526번지(3공단 배수지)
- 사업량 : 대기오염자동측정소 1개소
- 사업비 : 152,000천원
- 측정항목 : SO₂ , CO, NO₂ , PM-10, O₃ , 미기상(온도, 풍속, 풍량 등)
중금속(Pb, Cd, Cr, Cu, Mn, Fe, Ni)
- 설치지역 : 공업지역
- 사업기간 : 2010. 6 ~ 2010. 9
- 설치 및 운영자 : 포항시장

대기오염측정망 배치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포항 신항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윤 정 용

2010년 6월 1일

포항시 고시 제2010 - 44 호

포항 신항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명 칭 : 신항일반산업단지
-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번지 일원
- 다. 면 적 : 111,65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가. 포항 신항일반산업단지계획(안)은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의 확보와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대호산업 대표 손 대 호
-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97-3 초원빌라 1동 405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가. 개발기간 : 2010년 승인일 ~ 2012. 12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6호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유치 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나.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용지규모(m ²)	구성비(%)	비 고
계	73,506	100.0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9,316	53.5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4,190	46.5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24,847,000	-	1,224,847,000	100.00		
도 시 지 역	소 계	388,359,691	증)111,650	388,471,341	31.71		
	주 거 지 역	37,227,724	-	37,227,724	3.04		
	1종일반주거지역	4,738,723	-	4,738,723	0.39		
	2종일반주거지역	18,379,700	-	18,379,700	1.50		
	3종일반주거지역	10,618,317	-	10,618,317	0.87		
	준주거지역	3,490,984	-	3,490,984	0.28		
	상 업 지 역	4,981,593	-	4,981,593	0.41		
	일반상업지역	4,981,593	-	4,981,593	0.41		
	공 업 지 역	34,653,169	증)111,650	34,764,819	2.84		
	전용공업지역	13,957,823	-	13,957,823	1.14		
	일반공업지역	15,657,315	증)111,650	15,768,965	1.29		
	준공업지역	5,038,031	-	5,038,031	0.41		
	녹 지 지 역	214,565,070	-	214,565,070	17.51		
	보전녹지지역	2,502,730	-	2,502,730	0.20		
	생산녹지지역	14,752,574	-	14,752,574	1.20		
	자연녹지지역	197,309,766	-	197,309,766	16.11		
	미 지 정	96,932,135	-	96,932,135	7.91		
	관 리 지 역	소 계	219,852,065	감)74,530	219,777,535	17.94	
		미 세 분	-	-	-	-	
보전관리지역		81,390,263	감)44,470	81,345,793	6.64		
생산관리지역		44,797,200	-	44,797,200	3.66		
계획관리지역		93,664,602	감)30,060	93,634,542	7.64		
농림지역		589,617,475	감)37,120	589,580,355	48.14		
자연환경보전지역		27,017,769	-	27,017,769	2.21		

나. 토지이용계획(산업단지 개발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1,65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73,506	65.8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9,316	35.2	기계 및 가구 제외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4,190	30.6	
지 원 시 설 용 지	3,280	2.9	
지 원 시 설	3,280	2.9	
공 공 시 설 용 지	34,864	31.3	
도 로	11,114	10.0	
주 차 장	1,075	1.0	
녹 지	17,115	15.3	
경 관 녹 지	1,065	0.9	
완 충 녹 지	16,050	14.4	
공 원	2,910	2.6	
수 도 공 급 설 비	255	0.2	배수지
유 수 지	1,165	1.1	저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1,230	1.1	폐수종말처리장

다. 기반시설계획

□ 교통시설

1) 도 로

①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6 (1)	921 (385)	11,114 (4,330)	1 (1)	51 (385)	557 (4,330)	5	870	10,557	-	-	-
중로	1	453	7,082	-	-	-	1	453	7,082	-	-	-
소로	5 (1)	468 (385)	4,032 (4,330)	1 (1)	51 (385)	557 (4,330)	4	417	3,475	-	-	-

※ 면적은 가감속차로, 도로모퉀이 등이 포함된 수치임,()는 산업단지 구역 외 진입도로

②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1,306						
소 계						453						
신설	중로	2	1	15	집산 도로	453	중로2-신흥1	중로2-신흥1	일반 도로	신흥일반 산업단지	-	
소 계						436					-	
신설	소로	1	1	10	집산 도로	385	시도8호선 (소동리793-79)	중로2-신흥1	일반 도로	신흥일반 산업단지	-	
신설	소로	1	2	10	국지 도로	51	중로2-신흥1	신흥리 산134	일반 도로	신흥일반 산업단지	-	
소 계						417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3	중로2-신흥1	북동측지구계 (신흥리 490)	일반 도로	신흥일반 산업단지	-	
신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149	중로2-신흥1	동측지구계 (신흥리 산133)	일반 도로	신흥일반 산업단지	-	
신설	소로	2	3	8	국지 도로	66	중로2-신흥1	서측지구계 (신흥리 산134-3)	일반 도로	신흥일반 산업단지	-	
신설	소로	2	4	8	국지 도로	99	중로2-신흥1	남측지구계 (신흥리 산134-3)	일반 도로	신흥일반 산업단지	-	

2) 주차장

① 주차장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노외주차장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	-	중) 1,075	1,075		일반공업 지역

□ 공간시설

1) 녹 지

①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6개소			-	증)17,115	17,115		
신설	1	녹 지	완 충 녹 지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60	-	증)337	337		일반 공업지역
신설	2	녹 지	완 충 녹 지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	-	증)113	113		일반 공업지역
신설	3	녹 지	완 충 녹 지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	-	증)170	170		일반 공업지역
신설	4	녹 지	완 충 녹 지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5	-	증)15,430	15,430		일반 공업지역
신설	1	녹 지	경 관 녹 지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3	-	증)402	402		일반 공업지역
신설	2	녹 지	경 관 녹 지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3	-	증)663	663		일반 공업지역

2) 공 원

①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신흥	소공원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	-	증) 2,910	2,910	-	일반공업지 역

□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①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4	-	증)255	255	-	일반공업지 역

□ 방재시설

1) 유수지

①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지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	-	증)1,165	1,165		일반 공업지역

□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①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	-	증)1,230	1,230	-	일반공업 지 역

라. 용도지역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기반시설계획도 : 개제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1) 용수공급계획 : 418㎥/일(공업용수381㎥/일, 생활용수37㎥/일)

-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공급은 소동리.신흥리 일원에 공급되는 시도8호선변 D150mm 상수도관에서 본 사업지입구까지 D200mm로 확관하여 분기하고 사업 지내부 D100mm 관로를 부설하여 배수지까지 공급,
- 배수지에서 생활용수관 D80mm관로, 공업용수관 D100mm관로로 각 시설로 공급 토록 계획하였으며, 배수지는 사업지역 남측에 배치하였음.

2) 오·폐수처리계획 : 157㎥/일(폐수 128㎥/일, 오수 29㎥/일)

- 본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는 각 공장에서 1차 처리한 후 오수관에 연결하고, 생활오수는 직접 오수관에 연결하여 단지내 설치 계획인 폐수종말처리 장으로 유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고현천을 거쳐 동해로 방류 계획

3) 폐기물처리계획 : 총폐기물배출량 53.98ton/일

○ 본 산업단지의 운영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경제성 및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함.

4)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북포항지점에서 공급

5) 통신공급계획 : KT 북포항지사에서 공급

8.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계제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1) 진입도로(소로1-1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진입도로 소계				195,769	4,330						
1	청하면 소동리	32	답	1,560	96	김기식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121				
2	청하면 소동리	33	답	1,369	59	김복식	포항시 도동 649-18				
3	청하면 소동리	34	전	1,038	279	이형순	포항시 남구 상도동 607-1 천호파크 203호				
4	청하면 소동리	35	답	2,952	460	김영록	포항시 두호동 753 우방신천지타운 112-1805				
5	청하면 소동리	793-79	천	138,204	920	국(국토부)					
6	청하면 소동리	산81	임	15,213	667	김인숙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225-2				
						김수명	포항시 북구 두호동 635 롯데아파트3-203				
7	청하면 소동리	산82	임	4,760	721	나향희	포항시 남구 해도동 493-26				
8	청하면 신흥리	491	전	1,607	10	김상인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119				
9	청하면 신흥리	492	전	1,850	133	국(재정부)					
10	청하면 신흥리	494	전	1,130	553	남정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1-18				
11	청하면 신흥리	497	전	2,466	410	김두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299 경보전원맨션 4차 나동403호				
12	청하면 신흥리	산34-1	임	23,620	22	김정택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210				

2) 산업단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산업단지 합계					111,650						
1	청하면 신흥리	산133	임	17,263	15,418	손대호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97-3 초원빌라1동405호	장량동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873-6	근저당권 지상권	
2	청하면 신흥리	산134	임	19,551	18,390	손대호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97-3 초원빌라1동405호	장량동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873-6	근저당권 지상권	
3	청하면 신흥리	산134 -2	임	21,933	19,599	손대호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97-3 초원빌라1동405호	장량동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873-6	근저당권 지상권	
4	청하면 신흥리	산134 -3	임	26,648	26,648	손대호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97-3 초원빌라1동405호	장량동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873-6	근저당권 지상권	
5	청하면 신흥리	산134 -4	임	39,556	28,588	손대호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97-3 초원빌라1동405호	장량동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873-6	근저당권 지상권	
6	청하면 신흥리	산134 -5	임	3,086	1,552	손대호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97-3 초원빌라1동405호	장량동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873-6	근저당권 지상권	
7	청하면 신흥리	산160	구	1,455	1,455	국 (농림부)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5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공 고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0년 5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5. 28.

포 항 시 수 도 물 평 가 위 원 회 위 원 장

시 행 일	2010년 5월 중	검 사 기 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 수

구 분	검 사 항 목	경수장,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각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약 약 (수지연공사)	
			안계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염수		진전지	놀태지수	극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전읍	구룡포읍		흥해읍
미 생 물	1.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 강 상 수 유 해 영 양 유 기 물 질	4.납(Pb)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납소(F)	1.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비소(As)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세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크롬(Cr ⁶⁺)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1.6	1.0	1.5	1.7	1.8	0.5	1.0	1.8	1.4
13.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보론(B)	1.0mg/l이하	0.037	불검출	0.051	0.040	0.024	0.020	0.025	0.033	0.028		
건 강 상 수 유 해 영 양 유 기 물 질	15.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페니트로티론(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 독 제 및 소 독 부 산 물	31.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53	0.26	0.84	0.44	0.62	0.20	0.18	0.37	0.73	
	32.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517	0.0400	0.0487	0.0565	0.0348	0.0247	0.0280	0.0303	0.0174	
	33.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3109	0.03302	0.04019	0.03083	0.01346	0.01556	0.01440	0.01795	0.01449	
	34.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512	0.00700	0.00854	0.01784	0.01288	0.00743	0.00907	0.00874	0.00286	
	35.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55	불검출	불검출	0.0078	0.0085	0.0017	0.0045	0.0036	불검출	

구 분	검 사 항 목	경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신뢰기예부
			안계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염수		진전지	늘터지수	곡갈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산 미 정 리	36.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02.7	74.5	81.9	110.3	101.7	37.2	65.7	106.9	77.4
	37.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2.21	3.77	2.77	2.02	1.25	1.15	1.37	1.31	3.41
	38.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9.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1.색도(Color)	5도이하	1.0	1.0	1.0	1.0	1.0	1.0	1.0	1.0	불검출
	42.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3.수소이온농도(pH)	5.8-8.5	7.5	7.5	7.3	7.5	7.4	7.1	7.2	7.1	7.4
	44.아연(Zn)	3mg/ℓ이하	0.0021	0.0052	0.2913	0.0055	불검출	0.0026	불검출	0.0170	0.0039
	45.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26	12	14	29	29	13	22	18	10
	46.총발견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174.0	107.0	124.0	200.0	205.0	59.0	131.0	199.0	139.4
	47.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8.망간(Mn)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57	0.085	0.084	0.046	0.104	0.055	0.110	0.127	0.097
	50.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43	16	19	50	51	11	28	55	25
51.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24	불검출	불검출	0.022	0.024	불검출	0.029	0.020	0.024	
판 정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경 수 장 급수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한효동	해동동	택전리	문덕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71	0.56	0.81	0.51	0.67	0.35	0.41	0.29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021	0.0046	0.3680	0.0035	불검출	0.0020	불검출	0.3504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26	12	14	30	29	13	16	20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학야정수장 230-4791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